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407

발의연월일: 2024. 1. 26.

발 의 자:신현영・이소영・위성곤

강민정 · 송갑석 · 윤영덕

허숙정 • 이용선 • 윤미향

정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겪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상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의료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재난 피해자의 회복 지원이 어렵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 보니 재난 피해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매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재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하는 등 데이터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 및 신체·심리 상태에 관한 정보에 대한 장기추적 조사(코호트 조사)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주치

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치료 및 신체·심리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를 제65조의3으로 하고,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5조의2(재난피해자등의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
 - 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치
 - 료 및 건강 상담을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이하 "재난피해자등의 주
 - 치의 제도"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등 의료인 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피해자등의 주치의 제도를 함께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피해자등의 주치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재난피해자등의 주치의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3(재난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 난피해자등의 신체·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난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피해자등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치료 및 신체·심리 상태에 관한 정보에 대해 장기 추적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장기추적 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에"를 "재난피해자등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u> 신 설>	제65조의2(재난피해자등의 주치
	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
	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
	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치료
	및 건강 상담을 전담하는 주치
	의 제도(이하 "재난피해자등의
	주치의 제도"라 한다)를 시행
	<u>할</u>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
	사회 등 의료인 단체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피해자등의 주치의 제도를 함
	께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피해자등의 주치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재난피해자등의 주치의 제
	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제65조의2(포상) (생략)

<신 설>

<u>방법,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u>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65조의3(</u>포상) (현행 제65조의2 와 같음)

제71조의3(재난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 관은 재난피해자등의 신체·심 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 난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피해자등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치료 및 신체・심리 상태에 관한 정보에 대해 장기추적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장기추적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 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 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 · 신체 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 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 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 통신사업법 _ 제2조제8호에 따 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 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	항	케	따	른	る	<u> </u>	추	적	조	사	의
	<u>내</u> 된	}	및	방	법	, Ž	절 <i>></i>	<u>:}</u>	등	케	필	<u>유</u>
	<u>한</u>	사	항-	슨	다	통	. 령	렁.	<u>Ó</u> t	큰	정	<u>한</u>
	다.											
제	— 743	20	3(정.	보	제	공	요	.청	등	-)	1
						<u>}</u>	재님	<u> </u>	티하	가	등	에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1. • 2. (생략)

② ~ ⑨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